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8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안전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실효성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성상 민간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협치·공유하고자 구성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3조)

나. 위원의 해촉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협의회 활성화를 고려하고 안전 발생빈도가 적은 사항등을 고려한 법 개정(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양성평등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기능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의2에서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의의 소집 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회의 소집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9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금연구역 지정범위 신설과 정비를 통해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 구역 지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 공개공지 및 사유지(연면적 5,000 m^2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대지 등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일정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 금연구역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홍보와 동시에
지속적인 문제점 파악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1.>]